

부산광역시체육회
우수선수 경기력향상지원비 지급 규정

● 부산광역시체육회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 규정

제정 2016년 6월 15일

개정 2019년 10월 30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육대회(동·하계)에 출전하는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지원을 하기 위함에 있다.

제2조(용어의정의)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선수는 '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' 라고 하며,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'경기력향상육성비' 라고 한다.

제3조(자격기준)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로 한다.

1. 전국체육대회 및 해당종목의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
2.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이 가능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선수생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선수
3. 기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

제4조(지급 구분 및 대상) 경기력향상육성비는 장학금과 훈련보조금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장학금 : 고등학교 및 대학(교)에 재학 중이며, 전국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하는 우수선수
2. 훈련보조금 :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에 출전하는 우수선수(국군체육부대·의무경찰 소속 선수, 대학·일반부 통합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생 선수 등 포함)

<개정 2019.10.30.>

제5조(대상자 선정)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선발한다. 단, 회원종목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선발할 필요가

있을 시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따라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지급기준) 경기력향상육성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, 기준을 초과 하는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며,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하여는 우수선수 일시금 또는 성과수당(옵션)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기간)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간 중이라도 중지할 수 있다.

1. 당 해 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시 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
2. 당 해 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지 못한 선수
3.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불성실하거나 경기실적이 저조한 선수
4. 부산체육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선수

제8조(관리) 본회는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 훈련점검 및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, 시행한다.

부 칙(2016.06.1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16년도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9.10.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9.10.30.>

우수선수 경기력향상 육성비 지급기준 (제6조 관련)

1. 장학금(고등부, 대학부) (단위 : 원)

구분	지급기준	지급액/월
1등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개인득점이 150점 이상인 선수 - 부산연고 선수 중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수 (별도심의) 	500,000
2등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-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은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- 전년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	300,000
3등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은메달 이상을 획득한 선수 - 전년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- 전년도 개인단체종목 중 전국체육대회 대학일반 통합종목에서 개인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 	200,000
4등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- 기타 기량이 우수하여 전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 -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(증명서 첨부) 	100,000

비고 : 고등학생은 4등급에 한하여 적용

2. 훈련보조금(일반부) (단위 : 원)

구분	지급기준	지급액/월
1등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도 전국체전 300점이상 획득한 선수 중 본회가 특별히 인정이 되는 선수 -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 보전이 필요한 선수 - 일반부 출전 선수 중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우수선수(별도심의) 	2,100,000 ~ 5,000,000
2등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개이상 또는 개인득점 2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-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보전이 필요한 선수 - 일반부 출전 선수 중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우수선수(별도심의) 	1,100,000 ~ 2,000,000
3등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1개이상 또는 개인득점 100점이상을 획득한 선수 - 국가대표선수 중 전년도 체전에서 은, 동메달 획득 선수 -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보전이 필요한 선수 - 일반부 출전 선수 중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우수선수(별도심의) 	600,000 ~ 1,000,000
4등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50점이상 획득한 선수 -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보전이 필요한 선수 - 일반부 출전 선수 중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우수선수(별도심의) 	200,000 ~ 500,000